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5-31
----------	-------

2025. 4. 24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고병준 의원 외 7인
- 나. 제 안 일 : 2025. 4. 11.
- 다. 회 부 일 : 2025. 4. 11.

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의 규정된 취약계층의 범위를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 정비 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동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
 - 1) 입법예고 : 2025. 4. 4. ~ 2025. 4. 10. 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‘미세먼지 취약계층’의 정의를 반영하여, 조례의 법적 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,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. 특히, 기존 조례에서는 일부 계층(어린이, 영유아, 노인, 임산부 등)만을 포괄하고 있었으나, 개정안은 상위법령 기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2조제3호의 “미세먼지 취약계층”을 상위법령인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계층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 계층(어린이, 영유아, 노인, 임산부 등)만을 포괄하고 있었으나, 개정안은 상위법령 기준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, 옥외작업자, 교통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대상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됨.
- 이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, 법률적 일관성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상위법령과의 기준을 일원화할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지원사업 대상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염려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고, 상위법령의 인용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될 경우 마포구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설정이 다소 어려워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,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실무상 판단 기준과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칙 등을 구체화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관 계 법 령]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제23조(취약계층의 보호) ① 정부는 어린이·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(이하 "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,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,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14조(취약계층의 범위)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9. 24.>

1. 어린이·영유아·노인·임산부·호흡기질환자·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
2. 옥외 작업자,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